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7-25

부 산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20021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 고	○○○○시 ○○○구청장
변 론 종 결	2023. 4. 14.
판 결 선 고	2023. 5. 12.

주 문

1. 피고가 2021. 12. 23. 원고들에게 한 취득세 46,223,100원, 지방교육세 3,098,650원, 농어촌특별세 1,239,460원의 환급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7-25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4. 12. 13. 혼인하여 자녀 2명과 함께 원고들이 소유(각 1/2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 ○○○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종전주택'이라 한다)에서 거주하였다.

나. 원고들은 거주지를 이전하기 위하여 2020. 10. 22. 이 사건 종전주택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어 2020. 12. 11. ○○ ○○○구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들은 2020. 12. 30. 이 사건 종전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매수인에게 마쳐주고, 2021. 1. 4. 원고 B의 아버지 소유의 아파트인 ○○ ○○○구 C 아파트 G호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라. 원고들은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 세율로 계산한 취득세 5,800,000원(1%), 농어촌특별세 1,160,000원, 지방교육세 580,000원을 납부하였다.

마.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 취득 당시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인 원고 B의 아버지가 위 C 아파트 G호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취득이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는 안내에 따라, 2021. 10. 29. 그 중과세율(8%)을 전제로 한 세액과 기 납부한 세액의 차액인 취득세 46,223,100원, 지방교육세 3,098,650원, 농어촌특별세 1,239,460원 합계 50,561,21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을 납부하였다.

바. 원고들은 2021. 11. 1. 위 추가 납부분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12. 23.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위 거부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7-25

사. 원고들은 2022. 2. 2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11. 3.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1호증, 을 제1, 2,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혼인하여 자녀까지 두고 있어 원고 B의 아버지와는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였으므로, 같은 세대에 속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들과 원고 B의 아버지가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로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택의 취득을 1세대 2주택의 취득으로 볼 수 없다. 위와 같이 보지 않는다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은 1세대의 기준에 관하여 법률이 위임한 한계를 넘어 납세의무를 확장한 것이어서 헌법에 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투기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하여 주택 가격의 안정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함으로써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기임대주택과 더불어 일반주택도 중과세율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주택(종전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대체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도 2주택을 소유하게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7-25

되었더라도,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서 거주자에게 투기목적이 없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주택거래의 현실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양도를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0두27806 판결 등 참조).

나. 관련 규정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는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5항의 위임을 받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의3 제1항은 "법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7-25

다. 구체적 판단

위 관련 법리·규정 및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2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과 원고 B의 아버지는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에 속하는 사람으로 볼 수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① 1세대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지방세법 제13조의2는 2020. 8. 12. 지방세법 개정으로 신설된 조항으로, 그 입법 취지나 제도의 목적은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하여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등은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을 상향함으로써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보유를 유도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다'는 것이다.

② 원고들은 주거 이전 과정에서 이 사건 종전주택의 양도가 이 사건 주택의 매수보다 선행되었고 이 사건 주택의 수리(인테리어) 때문에 이 사건 주택으로 바로 이사 가지 못하고 약 5주 동안 원고 B의 아버지 소유 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인다.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약 5주 동안 원고 B의 아버지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는 거주 이전 목적의 주택 매매거래의 현실 등에 비추어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경우로서 거주 이전 목적 외에 부동산의 투기 목적 등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규정의 취지가 부동산의 투기를 차단하여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②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에게 특별히 부동산의 투기 목적을 찾아보기 어려운 경우에까지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7-25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보아 중과하는 것은 위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④ 게다가 원고들은 2014년경 결혼하여 자녀 2명과 함께 이 사건 종전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주거 이전 목적으로 2020. 12.경 이 사건 종전주택을 매도하고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한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원고 B의 아버지 소유 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B의 아버지와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이상 같은 세대라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7-25

별지

관계 법령

■ 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법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7-2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1.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또는 제1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자녀가 합가한 경우
3.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법」 제10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세대가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

끝.